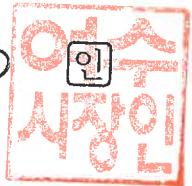


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임업인
등의 육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0 월 31 일

여 수 시 장 2023.10.31



여수시 조례 제1979호

붙임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1부

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,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업인” 이란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임업후계자”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독립가”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임업관계자”란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립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임업생산자 단체”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.
6. “임업인 단체”란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립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.
7. “임업인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.
 - 가.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
 - 나.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, 단체
 - 다.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, 법인
8. “임산물”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임업인 등의 권리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,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임업인 등은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진흥될 수 있

도록 여수시(이하 “시”이라 한다)의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대상) 여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,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업관계자, 임업생산자 단체, 임업인 단체
2. 임산물을 생산하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
3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,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
4.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5조(지원범위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수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3.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지원내용)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·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
2.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
3. 임산물 직거래·소비·홍보사업
4.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·연수 사업
5.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
6.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

7. 산림바이오매스(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)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·유통·가공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·전국대회 참가 지원

2. 임업관계자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

3. 그 밖에 생산,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다른 조례의 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, 관리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